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986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7년 8월 14일
-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2. 제안이유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 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변경
- 나.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조항에 ‘문화시민도시’ 개념 반영(안 제2조 ~ 제3조, 제5조)
- 다.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마.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 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 사. 일부 규정의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7.11.19.로 하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장~제5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제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조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적정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대상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 라. 기타
  -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5.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006년 7월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와 통합하여 문화분야의 중장기 정책, 전문예술법인 지정과 육성, 지방문화원 육성, 축제 지원, 미술작품의 설치 등의 분야를 통괄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6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추진을 제고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함.

또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와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 조례가 총 11장, 39개의 조로 구성된 데 비해 개정조례안은 총 10장, 43개조로 구성되었음. 먼저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은 개정조례안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고, 개정조례안 제5장 문화영향평가(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도 신설되었음. 또한 현행 조례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와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최종적으로 15개 조가 신설되고, 11개 조가 삭제되었음.

〈표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 대비표

구분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1장	총 칙	총 칙(개정)
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시민의 문화권 보장(개정)
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문화시민도시 정책의 수립(신설)
4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개정)
5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문화영향평가(신설)
6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기존 5장)
7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지방문화원의 육성(기존 6장)
8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축제의 육성(기존 7장)
9장	미술작품의 설치(삭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기존 8장)
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삭제)	보 칙
11장	보 칙	

〈표 2〉 조항의 신설 및 삭제

삭제(현행 조례)	신설(전부개정조례안)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안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10조(시민 문화의 정착)	안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안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제31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안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4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5조(기능)	안 제21조(분과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임기)	안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제37조(위원의 해촉)	안 제26조(문화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38조(회의의 운영)	안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안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안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안 제30조(문화영향평가의 결과 환류)
	안 제31조(재정의 지원)

-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시민’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한 바, 이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수립한 정책비전의 ‘문화시민도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표 3〉 문화도시 및 문화시민도시 비교표

계획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수립일	2006년		2016년	
비전	문화도시, 세계일류도시		문화시민도시, 시민행복도시	
목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	
방향	문화를 둘러싼 5개 분야별 계획		시민의 개개인의 삶을 둘러싼 문화계획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안)	
제정	2006.07.19.		2017년(예정)	
기본방향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복지 증진 시민문화의 정착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권 보장 시민문화활동 촉진 문화접근성 증진	문화다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협치
위원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서울시 문화본부 제공(2017.8)

동 개정조례안의 전체 조문에 걸쳐 현행 조례의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였는데, 타 시도 조례 중 “문화도시”를 제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를 제명에 사용한 경우는 없었음.

〈표 4〉 “문화도시” 제명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2014.5.1.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08.4.4.
3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5.5.13.
4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2011.8.5.
5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2.12.20.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문화시민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에 의하여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개정이 서울의 문화정책 기조를 ‘시민’으로 한정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시민도시’는 ‘문화도시’ 정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5〉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문화권”의 정의규정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명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조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이 적을 것이며, 안 제3조

제1항제3호 “문화영향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명 기재와 조문 명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2장 장 제목 “시민의 문화권 보장”의 경우,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의 장 제목을 변경한 것인데, 조례 입법 기술 상 정책기조를 장 제목으로 정하면 정책기조의 변경에 따라 장 제목도 불필요하게 변경되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원래 장 제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6〉 개정조례안 제2장의 체계

구분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제목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신설)
	제7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신설)
	제8조 문화복지의 증진(삭제)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 시민문화의 정착(삭제)	제10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신설)
		제11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2조 문화협치 기반마련(신설)

- 안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은 현행 조례 제7조(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조문에 포함된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복원’ 의무를 조항으로 신설한 것인데, 이는 2016년 수립된 <역사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21조(분과위원회)는 2016년 7월 수립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신설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검토되면서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은 문화본부에 ‘개선권고’를 통보한 바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며 안 제16조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조치하였음.

〈표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제14조(실태조사)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3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본부



단위 부처의 기본계획 관련 위원회의 경우, 현재 30명 이상 150명 이내에서 구성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과한 인원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표 8〉 서울특별시 위원회

구분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 기준
1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내
2	도시공간개선반	건축정책위원회	30명 이내
3	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0명 이내
4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민위원회	45명 이내
5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50명 이내
6	여성정책과	성평등위원회	40명 이내

안 제21조(분과위원회)의 경우,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 분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분과위원회에 적용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 제5장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울시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임.

## 〈표 9〉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②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③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④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⑤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예시<sup>1)</sup>로 들고 있음.

서울시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 영향평가 모두 계량적인 변수를 설정하여 수치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1)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상사업(제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농림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농림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건립(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청),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제주도),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사업(교육부),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경기 시흥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인천시)

있으나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변수 설정자체가 난해하고 가변적이어서 수치 측정은 가능하나 정확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16년 문화사회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sup>2)</sup>의 경우도 평가방법이 체크리스트 및 지수를 활용한 경우여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장점만 있을 뿐 수치를 활용한 정확한 계측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종적으로 산출된 계측치가 검증하려고 하는 계획과 정책의 객관적인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는지 주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므로 향후 평가모델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sup>3)</sup>.

- 현행 조례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내용을 갈음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음. 다만 상기 조례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동 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행정공백이 예상되어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11월 19일로 유보하였음.

---

2) <첨부 :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참고. 서울시는 서울 문화영향평가를 문화기본권(향수권, 참여권, 경관·환경권, 기반조성)과 문화다양성(시민다양성, 차이수용성, 정체성, 예술다양성)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정하였음.

3)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을 통해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을 시뮬레이팅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재생사업의 가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어떠한 문화적 성격이 높은 점수를 보였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내렸음.

- 기타 조문의 변경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16)』에 따라 띄어쓰기, 단어 변경 등의 자구 수정이며,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준속기한),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 제1조(시행일)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7년 11월 19일로 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이 11월 19일이므로 행정공백이 예상되어 정한 조치임.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문화영향평가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의 위원회 관련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경우,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예정인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이 상기 조례안 제8조제2항에 포함되어 있어,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것임.

〈표 10〉 수정의견 종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현행과 같음)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인 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문 화시민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문 화도시로 ----- ----- ----- ----- ----- ----- ----- ----- ----- ----- ----- -----</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 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 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도시"란 시민의 문 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 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 ----- ----- ----- ----- ----- -----</p>
<p>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 술품의 구현</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 간의 조성</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 되는 문화복지의 실현</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 업의 진흥</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화의 정착</p> <p>2. “문화예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3.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② (생략)</p>	<p>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p> <p>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u>문화도시</u>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문화시민도시</u>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문화도시</u> ----- ----- ----- -----.</p>
<p>제2장 <u>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u></p>	<p>제2장 <u>시민의 문화권 보장</u></p>	<p>제2장 <u>(현행과 같음)</u></p>
<p>제3장 <u>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u></p>	<p>제3장 <u>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u></p>	<p>제3장 <u>문화도시정책의 수립</u></p>
<p>제11조(<u>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u>) ① 시장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제13조(<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시장은 <u>문화시민도시</u>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제13조(<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시장은 <u>문화도시</u>를 ----- ----- -----.</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목적 및 기능) 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p>	<p>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p>	<p>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  --- <u>문화도시</u> -----  -----  -----  -----  -----  -----</p>
<p>② 자문위원회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제안</p>	<p>1.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1. 시의 <u>문화도시</u> -----  -----  -----  -----</p>
<p>2. 문화도시 및 예술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p>	<p>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4. (개정안과 같음)</p>
<p>3. 제25조 규정에 따른 축제의 운영(신설 및 폐지, 시기의 변경 및 개최 등)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p>	<p>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p>	<p>4. <u>시민제안사업</u> 검토</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u>문화원탁회의</u>의 개최에 관한 사항</p>	<p>5. <u>문화원탁회의</u>, <u>포럼</u>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그 밖에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p>	<p>6. 그 밖에 <u>문화도시</u> -----  -----  -----</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항</p> <p>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도시</u> ----- ----- -----.</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p> <p>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p> <p>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중</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p> <p>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④ ----- ----- -----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중합계</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u>합계획</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⑤ <u>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u>를 삭제한다.</p>	<p>회</p> <p>⑤ <u>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u></p> <p>⑥ (개정안과 같음)</p>

# 서울 문화영향평가 제도

## □ 추진개요

### ○ 추진경과

- 2015년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서울연구원)
- 2016년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문화사회연구소)
- 2017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공모사업 제안  
(서울시 50+지원종합계획)

### ○ 추진목적

-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정책을 넘어 정책에 문화적 가치와 관점 고려 및 반영
-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의 확산지원

### ○ 추진배경

- 문화기본법 제정(2014. 03.31)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도입.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기본법 제 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세부내용

### ○ 주요 방향

- 문화의 "규제-진흥"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권리-확산"의 관점으로 전환
- 서울시의 주요 시정 사업에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서울시의 주요 문화 시정 사업 중에서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정책을 평가

### ○ 실행체계

- 평가대상 선정(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실시 → 담당부서·기관에 평가보고서 전달

## ○ 평가대상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평가모델

- 지표체계 : 가치(Value)-평가영역(Domain)-지표(Index)-지수(Measure)
- ▶가치(Value)는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이자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궁극적 목표
- ▶평가영역(Domain)은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영역이자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영역
- ▶지표(Index)는 영역의 (바람직한)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 구분된 개념
- ▶지수(Measure)는 지표를 수치화해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값



[그림]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지표모형

- 평가지표(안)

평가가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방법	
1. 문화기본권	1-1. 향수권	1-1-1. 문화인프라	시설 0.5km 이내 거주인구비율, 체크리스트 예) 선택지 체크(평가지표별 체크항목 10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1점) <input type="checkbox"/> 미체크 (0점)	
		1-1-2. 접근성	체크리스트	
		1-1-3. 향수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활성화지수, 체크리스트	
		1-1-4. 관객개발	체크리스트	
	1-2. 참여권	1-2-1. 참여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활성화지수, 체크리스트	
		1-2-2. 예술교육	예술교육참여자수, 체크리스트	
		1-2-3. 공동체문화형성	체크리스트	
		1-2-4. 예산·기획 참여	체크리스트	
	1-3. 경관환경권	1-3-1. 조망권	체크리스트	
		1-3-2. 선도성	체크리스트	
		1-3-3. 지역과의 조화	체크리스트	
	1-4. 기반조성	1-4-1. 인적기반	인적기반지수, 체크리스트	
		1-4-2. 시설기반	시설기반지수, 체크리스트	
		1-4-3. 재정기반	재정기반지수, 체크리스트	
	2. 문화다양성	2-1. 시민다양성	2-1-1. 다문화	다문화지수, 체크리스트
			2-1-2. 계층다양성	계층다양성지수, 체크리스트
2-2. 차이수용성		2-2-1. 성별차이수용성	성별차이수용성지수, 체크리스트	
		2-2-2. 연령차이수용성	연령차이수용성지수, 체크리스트	
		2-2-3. 장애차이수용성	장애차이수용성지수, 체크리스트	
		2-2-4. 지역차이수용성	지역차이수용성지수, 체크리스트	
2-3. 정체성		2-3-1. 문화환경보존	체크리스트	
		2-3-2. 전통문화계승	체크리스트	
		2-3-3. 지역문화고유성	체크리스트	
2-4. 예술다양성		2-4-1. 장르다양성	장르다양성지수, 체크리스트	
		2-4-2. 창작자다양성	창작자다양성지수, 체크리스트	
		2-4-3. 공공·다원·소수자 문화	공공·다원·소수자문화활성화지수, 체크리스트	

## <참고>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정의서

### 1-1-1. 문화인프라

- 정의: 향수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해당 지역 내 시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복합문화공간 등)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핌
- 체크리스트
  - 문화예술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복합문화공간 등)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이를 계획·사업상에서 고려하고 있는가?
  -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률·가동률을 파악해 이를 계획·사업상에서 고려하고 있는가?
  - 계획·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이 축소될 가능성을 검토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계획·사업상에서 문화예술시설 개선·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문화예술시설 이용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포함한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계량지수: 문화예술시설 0.5km 이내 거주인구비율(아래 산식 참조)

지수산식	
$= \left( \frac{1}{P} \sum_{i=1}^n p_i \right) \times 100$	pi = i번째 문화예술시설 0.5km이내 거주 인구 수
	n = 해당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수
	P = 해당 지역 전체 인구 수

예) 어느 지역 내 전체 인구가 1,000명이고, 현재 아래와 같은 문화예술시설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복합문화공간(0.5km이내 거주인구는 30명)의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시설 0.5km 이내 거주인구비율' 지수는 현재 16%에서 19%로 3%p 증가

문화예술시설명	0.5km이내 거주인구(단위: 명)
A박물관	50
B박물관	30
C도서관	20
D도서관	20
E미술관	40
계	160

〈첨부자료 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명 칭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안)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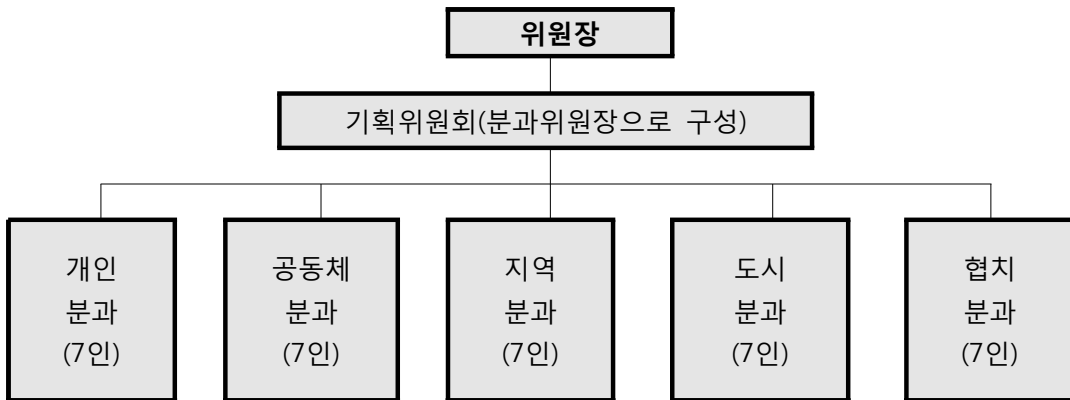
○ 기 능

-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시민제안사업 검토/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구 성 : 총35명 내외, 5개 분과/각 7명 이내

- 위원장/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분 과/기획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7명/분과위원장 5명으로 구성



○ 분과별 역할

- 개인분과 : 시민 문화권 보장, 문화영향평가, 문화예술교육 등 심의·자문
- 공동체분과 : 문화공동체, 문화다양성, 공유문화 등 심의·자문
- 지역분과 : 생활문화, 도시재생(문화재생), 문화지구, 젠트리피케이션 등 심의·자문
- 도시분과 : 역사문화자원,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창조산업 등 심의·자문
- 협치분과 : 문화네트워크, 문화 관련 조례, 시민수요정책 검토 등 심의·자문

<첨부자료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기존 문화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등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 위원명단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	문화정책	김정헌 (남)	1946년	전)서울문화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한국메세나협의회이사 서울대회화과졸업
2	문화정책	백선혜 (여)	1971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가나자와대학교 객원연구원 서울대지리학박사
3	문화정책	정희섭 (남)	1958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세종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4	문화정책	오지은 (여)	1971년	광진구립정보도서관장	연세대문헌정보학석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위원 서울도서관네트워크위원
5	문화정책	박은실 (여)	1965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서울대미술대학졸업 본부업무계획자문위원
6	문화정책	박신의 (여)	1957년	경희대 교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원장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
7	문화정책	이흥재 (남)	1954년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서울연구원(시정연)위촉연구원 하이서울페스티벌감독 자치구인센티브사업평가위원
8	문화정책	김윤환 (남)	1965년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공회대겸임교수 기획재정부부권위원회 민간위원 행안부주민자치센터혁신위원
9	문화정책	류재현 (남)	1965년	문화기획 상상공장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회장
10	문화정책	이승훈 (남)	1965년	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중앙대주소과 홍익대회화과
11	문화정책	이원재 (남)	1972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사)시민자치문화센터이사 일상예술창작센터기획위원
12	문화예술	정윤수 (남)	1968년	문화평론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13	문화예술	송수희 (여)	1975년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14	문화예술	인재진 (남)	1965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총감독
15	문화예술	오성화 (여)	1973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서울프린지 페스티벌축제 감독
16	문화예술	김석만 (남)	195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뉴욕대 대학원 공연학 박사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7	문화예술	이유리 (여)	1964년	청강문화산업대 뮤지컬 교수	뮤지컬 평론가
18	문화예술	이혜자 (여)	1963년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영상학과 교수	파리 10대학 대학원 문학박사
19	문화예술	임은순 (여)	1958년	세종대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
20	문화예술	은희경 (여)	1959년	소설가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21	문화예술	박계배 (남)	1957년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22	문화예술	안연정 (여)	1978년	문화로놀이짱 대표	사회적 기업 문화로 놀이짱
23	문화예술	김종휘 (남)	1966년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노리단 단장/하자센터 부센터장
24	문화예술	연제영 (남)	1962년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조계종 표준법요집 편찬 연구위원
25	문화산업	노명희 (여)	1971년	(사)한국만화가협회 이사	동국대정치외교학과졸업 여성만화가협회감사
26	문화산업	이정민 (여)	1973년	트렌드랩 506 대표	서울대의류학과졸업 미국FIT졸업
27	문화산업	박윤수 (남)	1950년	빅박 대표	전SFAA회장 디자인재단운영위원 동양대학교석좌교수등
28	문화산업	김명준 (남)	1962년	미디어트 대표	서울대전기공학과 문광부미디어센터평가위원
29	문화산업	최영묵 (남)	1963년	성공회대 교수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박사
30	문화산업	김경민 (남)	1972년	서울대 교수	창신동산업자원관광화연구용역 문화통한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하버드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박사)
31	문화산업	김시범 (남)	1964년	국립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 교수	연세대상경대학경영학과졸업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산업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32	문화산업	이재홍 (남)	1969년	송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송실대학원국어국문학과졸업 한국게임학회회장
33	문화산업	최유미 (여)	1962년	이화여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이화여대생활미술과졸업 한국애니메이션학회회장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34	문화산업	김영재 (남)	1963년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서울대경영학과졸업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이사
35	문화재	이경미 (여)	1963년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서울시 건축물문화재분과 위원
36	문화재	안희재 (남)	1960년	사)생명과 평화의길 상임이사	문화재보호재단예술감독 '한국의장'대표이사
37	문화재	김승국 (남)	1952년	(사)전통공연예술연구소장	서울시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 과위원장 문화재청전문위원
38	문화재	김성구 (남)	1950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위원(기념물분과)	전)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전)문화재청사적분과위원
39	문화재	안창모 (남)	1962년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서울시 표석분과위원회 위원
40	문화재	최성은 (여)	1956년	덕성여대 교수	한국미술사교육학회회장 서울시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
41	문화재	김홍남 (여)	1948년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국립중앙박물관장,전)국립민속 박물관장 시사편찬위원회위원
42	문화재	조 광 (남)	1945년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사연구회회장 서울시사편찬위원회위원
43	문화재	홍순민 (남)	1956년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위원(기념물분과)
44	문화재	진말숙 (여)	1948년	옥전문화연구소 소장	국정자문위원회예술분과운영위원 서울특별시여성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예술분과상임위원
45	관광	추신강 (남)	1964년	(사)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회장	한중상무중심대표 (사)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회장
46	관광	한경아 (여)	1967년	한국방문위원회 마케팅본부장	클럽메드리조트마케팅부장 강남구청자문위원
47	관광	나효우 (남)	1961년	(주)착한여행 대표이사	(주)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이사장
48	관광	김은영 (여)	1966년	(주)지오마케팅 대표이사	하이네켄 영업이사
49	관광	김향자 (여)	196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처장	경기대관광개발학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실장
50	관광	한범수 (남)	1960년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전) 한국관광학회회장
51	관광	황희곤 (남)	1958년	한국컨벤션학회회장(한림대 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52	관광	이혜련 (여)	1962년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경희대관광학박사 한국컨벤션산업협회위원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53	관광	김대관 (남)	1961년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MichiganStateUniversity 관광학박사
54	관광	김한준 (남)	1961년	도시연대 부이사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설계 포스트미디어 대표
55	체육	서상욱 (남)	1958년	한국뉴스스포츠협회 회장	이화여대체육학박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사 한국여성체육학회이사
56	체육	유지곤 (남)	1964년	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쓰쿠바대학교박사 한국체육사학회회장
57	체육	김매이 (여)	1974년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현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58	체육	강준호 (남)	1967년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59	체육	신승호 (남)	1961년	국민대 체육학부 교수(스포츠경영학)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60	체육	허현미 (여)	1965년	경인여대 아동체육과 교수	일본 추쿄(중경대) 체육학 박사
61	체육	손 환 (남)	1964년	중앙대 체육교육과 교수	한양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62	체육	유병열 (남)	1957년	한국체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미시간대스포츠경영학박사 서울대스포츠산업센터소장
63	체육	김예성 (여)	1974년	한국체대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	Univ.ofMinnesota박사 현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회장 대한검도회전무이사
64	체육	조정훈 (남)	1966년	조선일보 스포츠부장	조선일보기자(사회부,스포츠부) 한국체대체육학박사과정

□ 회의개최실적

연번	회의구분	개최일	회 의 안 건		참석대상인원	참석인원
			안건수	안건명		
1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위원회	2012-3-27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장전달및위원장선출</li> <li>○ 위원회 구성 목적, 기능 및 운영 방식 설명</li> <li>○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및 서울 메세나 추진계획(안)보고</li> <li>○ 자문위원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메세나 사업 추진체계 및 방식의 문제점.개선사항 등</li> <li>- 기타 문화정책 분야 건의사항</li> </ul> </li> </ul>	11명	7명
2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위원회	2012-5-3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공안 활성화 방안보고 (문화사업팀장)</li> <li>○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발제 (이원재위원)</li> <li>○ 자문위원 토론 및 의견수렴</li> </ul>	11명	8명
3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위원회	2012-6-19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창작공간운영개선안검토</li> <li>○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추진계획 보고</li> <li>○ 서울시미술은행사업추진보고</li> <li>○ 문화예술분과연석회의제안검토</li> </ul>	11명	11명
4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위원회	2012-7-24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분과 연석회의 결과보고</li> <li>○ 마을예술창작소 추진계획 보고</li> </ul>	11명	11명
5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2012-3-29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보고</li> <li>○ 2012 서울문화의 밤 추진방향 의견수렴</li> </ul>	10명	8명
6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2012-4-19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서울시 문화정책을 위한 구상논의</li> <li>○ 서울 문화의 밤 추진방향 자문</li> </ul>	10명	7명

연도	회의구분	개최일	회 의 안 건		참석대상인원	참석인원
			안건수	안건명		
7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2012-5-24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사업효율성 제고 방안</li> <li>○ 문화예술교육사업 자문방향</li> </ul>	10명	9명
8	문화산업 분과위원회	2012-03-23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구성목적,기능,운영방식 등 취지설명</li> <li>○ 위촉장 전달 및 위원장 선출</li> <li>○ 2012년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 주요사업보고</li> <li>○ 위원자문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패션산업 육성 시스템의 개선방안</li> <li>- 서울시 봉제교육 및 취업연계 방안</li> <li>- 서울 상상력발전소 클러스트 용역추진 방향</li> </ul> </li> </ul>	10명	7명
9	문화산업 분과위원회	2012-06-25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위원회 자문의견 검토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li> <li>○ 2012년 서울시 패션봉제 산업 육성 주요사업보고</li> <li>○ 자문의견수렴 : 동대문상권 활성화 관련 디자이너.봉제연계방안</li> </ul>	10명	7명
10	문화산업 분과위원회	2012-10-09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위원회 자문의견 검토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li> <li>○ 2012년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 사업 보고 및 자문의견 수렴</li> </ul>	10명	5명
11	관광 분과위원회	2012-04-10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주요 현안관련 자문</li> </ul>	10명	8명
12	관광 분과위원회	2012-10-18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광 및 관광분야 현안 자문」등</li> </ul>	10명	5명

연도	회의구분	개최일	회 의 안 건		참석대상인원	참석인원
			안건수	안건명		
13	관광 분과위원회	2012-11-07	1건	○ 「서울관광마스터플랜수립자문」 등	10명	5명
14	체육 분과위원회	2012-04-10	1건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10명	7명
15	문화정책 분과위원회	2013-06-11	2건	○ 업무계획설명 ○ 문화상시상관련	11명	8명
16	문화정책 분과위원회	2013-08-21	2건	○ 세계문화도시포럼(WCCF)참여 ○ 서울문화플랜준비계획(안)	11명	8명
17	문화정책 분과위원회	2013-11-27	3건	○ 2014년도예산사업설명 ○ 서울문화도시중장기 계획수립 준비중간보고 ○ e-문화복덕방명칭변경(안)	11명	7명
18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2013-11-19	3건	○ 문화예술과 핵심사업 설명 및 자문의견청취 ○ 우리동네오케스트라사업 재설 계방안논의 ○ 문화관광축제 및 상설문화 관 광프로그램선정	12명	7명
19	관광 분과위원회	2013-09-26	1건	○ 서울관광마스터플랜 자문	10명	3명

연도	회의구분	개최일	회 의 안 건		참석대상인원	참석인원
			안건수	안건명		
20	문화정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14-02-13	1건	○ 비전 2025, 문화도시 서울플랜 수립 준비 실무TF 운영결과 최종보고	12명	12명
21	문화정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14-04-02	2건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 재위촉 ○ 문화도시기본계획수립계획 및 기본구상연구 보고	12명	9명
22	문화정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14-08-26	3건	○ 문화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보고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및 위원 상건례 ○ 전효관위원 해촉	12명	10명
23	문화산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14-07-18	2건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 재위촉 ○ 문화산업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논의	10명	6명
24	문화정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15-10-27	3건	○ 비전2030 시민문화도시 기본계획 비전, 추진방향·체계, 추진과제 및 주요사업의 계획 설명 ○ 위원별 의견 논의 ○ 계획 승인	15명	15명

〈첨부자료 4〉 전부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문화도시</u> 기본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u>인간중심적 인 문화도시</u>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u>문화예술진흥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u>지방문화원진흥법</u>」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u>를 실현하고 <u>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u>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u>시민이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u>을 조성하고, <u>시민이 자율적 으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u>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문화도시</u>”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u>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u>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u> 기본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u>문화시민도 시</u>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u>문화기본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u>문화예술진흥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u>지방문화원진흥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u>을 조성하고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u>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문화시민도시</u>”란 <u>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u>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삭 제〉
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삭 제〉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	〈삭 제〉
복지의 실현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삭 제〉
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삭 제〉
<p>2. “문화예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신 설〉	
	<p>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3.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신 설〉	
	<p>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p>

현행	개정안
<p>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p> <p>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u>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p> <p>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p>〈신 설〉</p>	<p>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p>
	<p>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p>
<p>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p>	<p>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u>한다.</p> <p>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7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u>힘써야 한다.</u></p> <p>② 시장은 <u>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u></p>	<p>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u>마련</u>한다.</p> <p>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현행과 같음)</p> <p>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u>보존·복원</u>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u>노력</u>한다.</p> <p>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u>강화</u>하기 위해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u>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u>하고, <u>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u>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p>
<p>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p>	<p><u>〈삭제〉</u></p>
<p>제10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p>	<p><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p>
<p>제11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p>	<p>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p>

현 행	개 정 안
<p>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행한다.</p> <p>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p> <p>제13조(목적 및 기능) 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p>	<p>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p> <p>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p>

현 행	개 정 안
<p>② 자문위원회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p> <p>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제안</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 문화도시 및 예술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p> <p>3. 제25조 규정에 따른 축제의 운영(신설 및 폐지, 시기의 변경 및 개최 등)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p> <p>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p>	<p>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p> <p>4. 시민제안사업 검토</p> <p>5. 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삭 제〉</p> <p>6. 그 밖에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정책, 축제, 문화재, 체육을 포함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u>&lt;삭 제&gt;</u></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li> <li>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li> </ol>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④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li> <li>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13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u>시장</u>이 소집한다.</p> <p>② <u>시장</u>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전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u>위원</u>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u>안전</u>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⑤ <u>자문위원회</u>(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u>자문위원회</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u>시장</u> 또는 <u>위원장</u>이 소집한다.</p> <p>② <u>시장</u> 및 <u>위원장</u>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전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④ <u>위원회</u>(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u>위원회</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⑥ <u>자문위원회</u>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u>자문위원회</u>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p>	<p>⑤ <u>위원회</u>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u>위원회</u>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분과위원회) ① <u>위원회</u>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u>분과위원회</u>는 <u>위원회</u>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u>분과위원장</u>은 각 <u>분과위원회</u>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u>분과위원회</u>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p> <p>④ <u>분과위원장</u>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u>위원회</u>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u>분과위원장</u>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p> <p>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u>위원회</u>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p>

현 행	개 정 안
<p>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운영세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운영세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 설〉</p>	<p>제5장 문화영향평가</p>
<p>〈신 설〉</p>	<p>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li> <li>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li> </ol>

현행	개정안
	<p>〈신설〉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p> <p>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p> <p>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p>	<p>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p> <p>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p> <p>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p>

현행	개정안
<p>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u>활동중인 비영리법인·단체</u></li> <li>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li> <li>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u>지정신청</u>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li> <li>2. 재정 운영의 건전성</li> <li>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li> <li>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li> <li>5. <u>재능기부 등 사회적 기여도</u></li>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자중에서 회의 개최</u>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u>회의종료</u>와 함께 자동으로 <u>해촉</u>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u>의원</u></li> </ol>	<p>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u>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u></li> <li>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li> </ol> <p><b>&lt;삭 제&gt;</b></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u>지정 신청</u>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li> <li>2. 재정 운영의 건전성</li> <li>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li> <li>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li> <li>5. <u>사회적 기여도</u></li>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의 <u>위원</u>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사람</u> 중에서 회의 <u>개최</u>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u>회의 종료</u>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u>해제</u>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u>위원</u></li> </ol>

현행	개정안
<p>2명이내</p> <p>2. <u>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하는 자</u> 1명</p> <p>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자</p> <p>⑤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명 이내</p> <p>2. <u>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u> 1명</p> <p>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p> <p>⑤ <u>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u>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0조(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 전시실적이어연 1회 미만인 경우</li> <li>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 · 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전시 ·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li> <li>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li> </ol> <p>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전시 ·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li> <li>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li> </ol> <p>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p>	<p>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p>

현 행	개 정 안
<p>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6장 지방문화원의 육성</p> <p>제2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과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li> <li>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li> </ol> <p>제23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li> <li>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li> <li>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li> <li>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li> <li>5.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li> <li>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li> <li>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li> </ol>	<p>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p> <p>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li> <li>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li> </ol> <p>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li> <li>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li> <li>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li> <li>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li> <li>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li> <li>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li> <li>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li> </ol>



현행	개정안
<p>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9. <u>그밖에</u>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p>	<p>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9. <u>그 밖에</u>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p>
<p>제7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p>	<p>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p>
<p>제2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u>축제</u>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u>문화예술축제</u>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조(축제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u>축제</u>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서울의 대표<u>축제</u>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u>문화예술축제</u>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서울의 대표 <u>문화예술축제</u>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민간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u>축제</u>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u>축제개최자</u>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9조(민간 <u>문화예술축제</u>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u>문화예술축제</u>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u>문화예술축제</u>의 <u>개최자</u>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u>축제</u>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p>	<p>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u>문화예술축제</u>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p>

현행	개정안
<p>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u>대행토록</u> 할 수 있다.</p> <p>제28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축제시책·개최성과</u>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u>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사무의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u>)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u>축제</u>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p>	<p>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u>위탁하거나 대행하게</u> 할 수 있다.</p> <p>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u>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u>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u>)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u>문화예술축제</u>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p>
<p>제8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p> <p>제2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p>	<p>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p> <p>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u>같은 법 시행령</u>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p>

현 행	개 정 안
<p>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li> <li>2. 업무시설</li> <li>3. 숙박시설</li> <li>4. 판매시설</li> <li>5. 위락시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u></p>	<p>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의 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3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거쳐야 한다.</p> <p>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3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미술작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p> <p>②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작품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34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p>	<p>&lt;삭 제&gt;</p>
<p>제35조(기능)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li> <li>2.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li> <li>3. 미술작품의 공공성</li> <li>4.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li> <li>5. 미작품의 사후관리</li> <li>6.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li> <li>7.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li> <li>8. 그 밖의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li> </ol> <p>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p>	
<p>제36조(구성 및 임기)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li> <li>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명</li> <li>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li>4. 그 밖에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li> </ol>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30조제3항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⑦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li> <li>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li> <li>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li> </ol>	<p>〈삭 제〉</p>
<p>제38조(회의의 운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장 보 칙</p>	<p>〈삭 제〉</p> <p>제10장 보 칙</p>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29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p>	<p>〈삭 제〉</p>
<p>2. 제30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제작·설치권장 및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p>	<p>〈삭 제〉</p>
<p>3. 제31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p>	<p>〈삭 제〉</p>
<p>4. 제32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p>	<p>〈삭 제〉</p>
<p>〈신 설〉</p>	<p>부 칙</p>
<p>〈신 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제2조(존속기한)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p>
<p>〈신 설〉</p>	<p>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p> <p>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p> <p>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p> <p>⑤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p>